

2019년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박미성 | 부연구위원 | 포럼운영 총괄

최지현 | 명예선임연구위원 | 포럼간사(이슈발굴, 대내외 여건변화 분석 등)

최재현 | 연구원 | 포럼운영 실무(예산, 대내외 여건변화와 이슈 조사 등)

연구자료 D498

2019년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2.

발행인 | 김홍상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프리비

ISBN | 979-11-6149-352-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9년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박미성(부연구위원)
연구원: 최지현(명예선임연구위원)
최재현(연구원)

차 례

제1장 2019년 농식품 안정정책 포럼 개요

1. 포럼운영목적 및 기대효과 1
2. 포럼개황 2

제2장 2019년도 제1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1. 주제발표 1. 2019년 농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방향 6
2. 주제발표 2. 해외주요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법 동향과 시사점 16
3. 제1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주요 토론 요지 40

제3장 2019년도 제2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1. 주제발표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 소개 44
2. 주제발표 2. 농산물 안전성 조사 51
3. 제2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주요 토론 요지 64

제4장 2019년도 제3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1. 주제발표 1. 국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바른이해와 발전방향 68
2. 주제발표 2. GAP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조 82
3. 제3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주요 토론 요지 96

제 1 장

2019년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개요¹⁾

1. 포럼운영목적 및 기대효과

- 근래에 들어 단체 식중독 사태, 계란 살충제 사태, 식품 이물질 혼입 사건 등 농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등장과 이로 인한 정부, 생산자 및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입안 및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법, 제도, 생산, 소비,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한 농식품안전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되었음.
- 2019년에는 법, 제도, 미생물, 축산, 정보교류 등 다양한 식품안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농축산식품안전이슈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정책당국과의 자료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포럼을 통해 농식품안전 정책의 이슈를 발굴하고자 함.
-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농식품안전포럼 위원들의 주제 발

¹⁾ 2018년에 수행한 농식품안전포럼과 연속한 사업으로, 포럼운영의 목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유사할 수 있음.

표 및 토론을 통해 정부의 중장기 농식품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기관들의 농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며, 열린 토론을 통한 농축산물 안전관리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포럼개황

- 명칭: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센터
- 구성: 농식품 안전분야 교수·연구원·단체 등 전문가 20~30명
- 위원장: 공동위원장체제로 운영하되 민간위원장이 주도
 - 민간위원장: 호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명예선임연구위원
 - 제1회 포럼 결과 경상대학교 정덕화 교수 선출
 - 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
- 운영기간: 2019년 6월 ~ 2019년 12월

표 1-1. 2019년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위원구성 체계

분야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	산업계	계
법·제도	6	1			7
미생물 등 식품안전	7				7
정보교류		1	2		3
생산현장	1			2	3
계	14	2	2	2	20

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됨

표 1-2. 농식품안전포럼 위원구성

순번	성명	소속	주요 경력	분야
1	정덕화	경상대 석좌교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제도
2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제도
3	양병우	전북대 교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공공소통연구소장	제도
4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제도
5	사동천	홍익대 교수	농업법학회 회장	법
6	제철웅	한양대 교수	한국후건·신탁연구센터장	법
7	송재일	명지대 교수	농업법학회	법
8	하상도	중앙대교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미생물
9	이민석	고려대 식품공학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미생물
10	윤기선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회장	식품
11	박태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신식품
12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식약처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	축산
13	정구용	상지대 축산학과	전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축산
14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토종닭협회장	축산
15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연합회 정책부회장	농업
16	정하숙	덕성여대 교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화학물질
17	이광근	동국대 식품공학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화학물질
18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정보교환
19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정보교환
20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정보교환

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됨

제 2 장

2019년도 제1회 농식품 안정정책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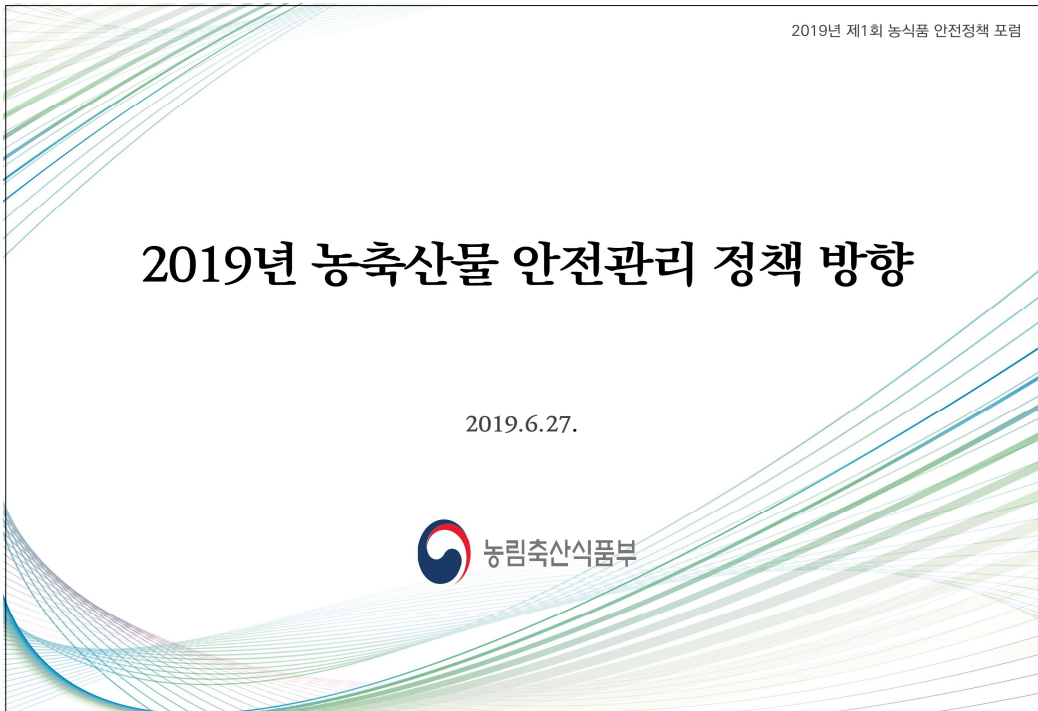
- ◆ 일시: 2019년 6월 27일 (목) 14:00 ~ 16:00
- ◆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Seminar Room A(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 ◆ 주요논의내용
 - 2019년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방향
 - 해외주요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법 동향과 시사점
 - 향후 견학 및 포럼 일정 논의

◆ 세부일정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인사말씀	유통소비정책관
14:05 ~ 14:15	10'	○ 포럼 운영계획 설명 ○ 위원장 추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
14:15~14:30	15	○ 2019년 농식품 안전정책 방향	위생관리품질팀장
14:30 ~ 15:10	40'	○ 전문가 발제 - 해외주요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 법 동향과 시사점	홍익대 사동천 교수
15:10 ~ 15:50	40'	○ 자유 토론	위원장
15:50~16:00	10'	○ 향후 견학 및 포럼 일정 논의	

* 사회: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1.
2019년 농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방향
- 이동식 팀장(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I 추진배경

II 그간 추진성과

III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I 추진배경

II 그간 추진성과

III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I 추진배경

1. 현황

◆ **농산물 안전 관리체계**

- 식약처가 농산물 안전관리 총괄하되, **농식품부는 생산단계 안전관리** (유통단계 일부*) 위탁 받아 수행
 - * RPC, 전통시장, 로컬푸드 등 생산과 밀접한 유통 농산물은 농식품부 담당
-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수출 농산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시
 - * 잔류농약·곰팡이독소·미생물 등 연간 8만여건 분석('11~'17년 부적합률 평균1.49%)

I 추진배경

1. 현황

◆ **축산물 안전 관리체계**

- 식약처가 축산물 안전관리 총괄하되, **농식품부는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검사 및 HACCP 제도 운용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 제고

I 추진배경

2. 추진배경

- 살충제 계란 사태('17.8월) 이후 소비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 요구
- 정부노력으로 신뢰회복 중이나 여전히 농약 등에 오염된 농축산물이 발생하고, 안전관리체계에서 차단되지 않은 소비 사례도 발생

국민들의 안전 가치 요구
[농식품 구매 시 중요 요인은?]

요인	비율
안전성	41%
신선도	35%
가격	8%
기타	16%

KREI 조사

식품안전 신뢰도
[국내산 식품 안전한가?]

연월	YES (%)
'13.8월	75%
'17.8월	58%
'19.4월	78%

한국갤럽 조사('19.4)

⇒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사전·사후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I 추진배경

II 그간 추진성과

III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II 그간 추진성과

농축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17.8월)을 계기로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 **농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계란 안전성 확보

- 모든 산란계 농장(1,500여 농가) 안전성 전수검사
- 공동방제지원사업 및 축사 세척·설비교체 지원

계란 안전성 부적합 농가 감소

연도	부적합 농가 수
'17	78호
'18	9호

사육환경표시제 도입

-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 * (신규농가) '18.9월부터 적용 (기준농가) ~25년까지 조기전환 유도
- 사육환경 표시로 소비자 사육환경 확인 가능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개선

연도	사육밀도 기준
현행	0.05m²/마리
'18.9-	0.075m²/마리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약 등 위해물질 요소 관리 강화
- PLS 시행 대비 제도 인식 확산
 - * PLS 인지도 조사 결과 ('18.上) 51.3% → ('18.下) 71.5%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

연도	부적합률 (%)
'17	1.9%
'18	1.3%

II 그간 추진성과

농축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 특히, **농약 허용기준강화 제도(PLS) 전면 시행에 ('19.1.1.)대비한 보완대책 마련**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농약등록 확대

- 직권등록, 잠정기준 등 사용가능 농약 등록* 7천여개 확대
-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 중심 집중 등록 추진
-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등록(907개)

농약 안전사용기준

연도	안전사용기준 수
'17	27천개
'18	54

비의도적 오염 방지

- 도양잔류*, 비산** 등 피해 최소화 위한 잔류허용기준 마련
- * DDT, 엔도살판, BHC 잔류기준설정
- ** 후작물 전이가능성 25개 농약성분 잔류기준설정
- 항공·드론 방제 매뉴얼 제작·보급 (12월, 농진청·산림청)

잔류허용기준

연도	잔류허용기준 수
'17	8천개
'18	13

적용시기 조정

-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피해 방지 위해 제도 적용시기 조정
- '19.1.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

II 그간 추진성과

농축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으로 **농업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성 제고** 등 PLS 제도의 **긍정적 외부효과 확산**

농업인	농약판매상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영세농 대상 경로당순회 교육 (43천 개소, '19.3월) ■ 새해농업인교육 PLS 과정 의무편성 (273천 농가, '19.3월) ■ 과거 부적합 농가 농약사용 컨설팅 (47천 농가, '19.6월) ■ 프로사이미돈 검출지역 직육반 특별 교육(715명, '19.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판매인 교육(1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별 농약사용 안내서 배포, 농약정보 서비스 활용법 숙지 ☞ 폐기·밀수 농약의 유통 금지, 신고조치 강화 ■ 프로사이미돈 농약 수거·보상 이벤트(5.15~6.15) 1,505개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우리 농산물 안전성 홍보 ■ 소비자 정책포럼 및 교육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S 시행에 대비한 농업계 노력의 공감 및 신뢰 회복에 중점 

I 추진배경

II 그간 추진성과

III 업무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III 업무 추진방향과 세부과제

추진방향

안심할 수 있는 생산환경, 농업의 기본입니다

농약 오남용, 가축 질병·위생·안전 문제

안전에 대한 농업인의 가치 인식 전환

- PLS(농약허용기준 강화 제도 '19.1.1. 전면시행) 연착륙 지원
- 사용가능 농약 대폭 확대, 홍보강화(경로당 순회교육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의 근본적 개선 추진

- 사육단계 준수사항 보완 등 제도개선
-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 추진('20년 예정)

추진방향 → 생산단계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철저히 관리하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III 세부과제 : 1. PLS 연착륙 지원

1. 농산물 PLS 연착륙 지원

- ◆ 사전 제도 강화와 관행적 농약사용 근절을 통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 ◆ PLS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대응 추진**

소통체계 구축

- ✓ **민관합동 T/F 운영, PLS 상황반 구성·운영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
- (PLS 상황반*) 부적합 농산물 발생 동향 점검 및 현장애로사항 수렴
 - * 구성: 농식품부(총괄), 농관원,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등
- (PLS 시행반*) 부적합 반복 지자체 대상으로 교육·지도 등 현장계도 강화
 - * 구성: 농식품부, 지자체, 농관원 사무소, 지역농협 등
- (농식품안전정책 포럼) 안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민관 전문가 논의 등 현장소통강화
- (협업구축) 식약처, 농진청 등 농약안전 업무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농약 추가 등록


- ✓ **농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추가 농약 등록 추진(농진청)**
- (농약등록 확대) 발작물 용 제초제, 토양살균제 등 약 4천 건 이상 농약 추가 등록 목표(~12월, 농진청)
- (잔류기준 확대) 토양 잔류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잔류기준 확대 검토
 - *('18) 25개 농약성분, 53개 그룹잔류기준 설정 → ('19) 프로사이미드 박과 채소류 추가 설정

(농약등록설치) 시역별 수요조사(시사제) → 식물 재배현황, 병해충 발생유무 (도농기술원) → 중독여부 검토(농식품부) → 인체환경 안전성 여부 검토 (농진청) → 약해 간이검증(도농기술원) → 잠정 안전사용기준 마련

III 세부과제 : 1. PLS 연착륙 지원

1. 농산물 PLS 연착륙 지원

- ◆ 사전 제도 강화와 관행적 농약사용 근절을 통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 ◆ PLS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대응 추진**

농약관리 강화	교육·홍보
<p>√ 미등록 농약 차단을 위해 모든 농약 기록관리 의무화(’19.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 안전사고 시 추적 관리 * (기준) 9종 → (개선) 모든 농약 (다만, 원예·가정용 50ml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 ** 판매정보,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정보 등의 통합적 관리(’20년~) 	<p>√ 농업인의 PLS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밀착형 교육·홍보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교육) 부적합 이력 농가 대상 등으로 컨설팅* 지원 및 SMS 정보** 제공 * 주산지 사전 지도반 운영(농진청, 지자체 등) ** 주요 작물 출하시기별 부적합 사전정보 제공 등 ▪ (캠페인) 민간주도 “농약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추진 ▪ (기타) 대체 농약 포스터, 리플릿 배포 <p>√ PLS 민원상담전화(☎1544-8261) 개설 및 현장상담센터 구성·운영(6월~)</p> 

III 세부과제 : 2.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사전예방 중심**으로 **농산물안전성조사** 추진
 - * 안전성조사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68조, ** 전체조사 건수 : (’18) 73,371 → (’19) 60,000
- ◆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공급 차단**
- ◆ **정책사업과 연계한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수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

안전성조사
<p>√ 부적합 우려 농가, 품목 등 취약분야 중심의 검사 확대* 및 무작위 안전성 조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조사 규모 : (’18) 16천건 → (’19) 19천건 ▪ 부적합 이력 농가·품목 중심의 검사 확대 ▪ 희망농가 대상 출하 전 안전성 조사 우선 지원 ▪ 생산농가 중심에서 출하 전 유통길목(집하장·APC) 으로 조사 대상 관리범위 확대 ☞ 안전성 분석기간 단축(최대 7일 → 3일) 시료수거(0일차)>당일 직접 배송(1)>시료분석(2)>결과확인/통지(3) <p>√ 재배환경(농지·용수·자재) 위해물질 관리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p>

III 세부과제 : 2.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사전예방 중심**으로 **농산물안전성조사** 추진
 - * 안전성조사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68조, ** 전체조사 건수 : ('18) 73,371 → ('19) 60,000
- ◆ 농약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공급 차단**
- ◆ **정책사업과 연계**한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수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

정책지원 조사	제도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사후 관리와 연계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 ▪ 정책사업 참여 농가 대상 안전성 조사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조성 * 지원사업 : 수출농산물, 로컬푸드, 학교급식, 쌀, 공동브랜드, 친환경·GAP 인증 등 8개 사업 대상 3만 건지원 (전체 조사수량의 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우려품목에 대한 신속한 검사 체계 수립 ▪ 부적합 우려 품목에 한하여 생산자 입회 없이 시료 수거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고지의무 삭제, 출입·수거·조사·열람을 거부 또는 방해 시 처벌 강화 등 √ 농산물 안전성 이슈 발생시 위기 관리 체계화 ▪ 농산물 등 안전사고 긴급행동 지침을 기반으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

III 세부과제 : 3. 축산물 안전관리

3. 축산물 안전관리

- ◆ 생단단계 축산물(식육·식용란·원유)에 대한 정밀검사로 **위해요소 사전차단**
- ◆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대**로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위생관리	계란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단계 기본 준수사항 보완* 추진 등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강화 * ('18) 사육시설 내 전용 작업복, 신발 착용, 동물약품기준 준수 등 → ('19.보완) 동물약품 사용시 투약지도 등 √ 항생제 적정사용·감시체계 등 생산단계 축산물의 항생제 관리 강화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확대 * ('13) 20종 → ('17)25 → ('18)32 → ('19)61종(계획) ▪ 소, 돼지, 가금류 질병별 맞춤형 항생제 가이드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전체 산란계 농가(1500여) 대상 살충제 검사 실시 등 계란 안전관리 강화 ▪ 닭 진드기 많아지는 하절기(5~8월)에 집중검사 ▪ 산란계 농가 공동방제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운영 * ('18) 40호, 3억 → ('19) 100호, 7억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실시(계란 살충제 검사 불합격 농가 의무 적용, '19.7월~)

III 세부과제 : 3. 축산물 안전관리

3. 축산물 안전관리


-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식용란·원유)에 대한 정밀검사로 **위해요소 사전차단**
- ◆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대**로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원유 안전관리	축산물 HACCP 확대
<p>✓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사업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유장에서 원유에 대한 책임 수의사 검사체계에 추가하여 국가잔류물질 검사제도 도입 추진(20년 예정) ☞ '18-'19년 제1,2차 원유 잔류물질 시범조사 실시 ☞ 제도도입 위한 관련 고시 제정 추진('19년 하반기 예정, 식약처 협업) ▪ 낙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지도·홍보 강화 *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 포스터 배포 등 	<p>✓ 생산단계 HACCP 확대 및 운영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도 축산물 HACCP 표시대상으로 추가 확대 추진 *(기존)도축장·가공장만 표시 → (개선) 농장 추가 ☞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추진 ('19년 하반기 예정, 식약처) ▪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의 인센티브 강화 *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HACCP 축산물 사용 권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농축산물 안전을 한층 더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농림축산식품부**

주제발표 2.
해외주요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법 동향과 시사점
- 사동천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농식품포럼 1차 회의

해외주요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법 동향과 시사점

사동천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목 차 -

1. 서론
2. 각국의 농식품 안전법 동향
 1.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2. EU
 3. 일본
 4. 중국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
4. 시사점

1. 서론

◆ 농식품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 과학적 근거의 부족으로 막연한 사회적 불안감 발생
-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고령화로 소비자들은 건강문제에 지대한 관심
- 농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사항이 됨

◆ 대응방안 모색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푸드체인 모든 단계의 관리 필요성
- 과학적 근거, 사전 예방, 신속한 대응
- 푸드체인 전 단계의 일괄적인 관리
- 관리주체의 단일화

1. 서론

◆ 식품안전 관리 제도

생산	수확	가공	유통·판매	소비
GAP, PLS		HACCP, GMP	GHP	RECALL
TRACEABILITY				
단일기관의 관리, 위해성 평가기관의 독립성보장				

- 생산 가공단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e Practices),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우수제조관리제도(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 유통 판매단계 : 우수위생관리제도(GHP, Good Health Practices)
- 소비단계: 회수제도(Recall System)
- 전단계 : 이력추적 관리제도(Traceability)

1. 서론

◆ 식품안전 관리의 문제점

- 단계별 관리주체가 상이
 -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신속한 대응의 어려움
- 관리대상에 따른 관리주체가 상이
 - 종합적인 대응의 어려움, 인적자원의 한계, 중복

◆ 현행 관리기관

- 정책총괄 :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위원회
- 관리주체 : 농식품부(농산물 생산, 축산물), 식약처(농산물가공 유통 소비), 환경부(물관리·농업환경), 법무부(보건범죄단속), 교육과학기술부(학교급식·학교보건), 기획재정부(주류), 지식경제부(무역·표준화·GMO 국가간 이동)

- ◆ 이하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Ⅱ. 각국의 농식품 안전법 동향

1.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1) 개설

-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은 2009.6.8. 연방하원에서 발의, 2010.12.21. 양원합동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1.4.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
 - 기존에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식품안전기본법적 성격]에 근거하여 연방식품의약품청(FDA)이 식품안전관리를 담당
 - FSMA는 부정불량식품(adulteration)의 규제와 오표시(misbranding)의 규제를 목적으로 함
- ◆ FSMA의 특징
 - FSMA는 글로벌 식품수입까지 포함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FSMA는 '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으로' 식품규제의 패러다임을 개혁
 -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FDA에게 부여함으로써 예방적·선제적 대응에 중점, 하위규정 제정권 부여, 압류와 봉인 권한

1.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2) FSMA의 체계

- ◆ FSMA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 1장: 식품안전문제의 예방능력 개선
 - 제 2장: 식품안전 문제의 적발 및 대응능력 향상
 - 제 3장: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
 - 제 4장: 기타 사항
- ◆ 제1장에서는 식품안전 예방에 기초한 행정체제의 개선을 담고 있음.
 - 식품시설 등록, 위해요소 분석 및 위험성에 입각한 예방관리, 농산품 안전기준, 국내 식품안전 역량강화, 식품의 위생적인 운송, 어린이의 식품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치료, 항구를 통한 반입
- ◆ 제2장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의 적발 및 대응능력 향상을 담고 있음
 - 통관검사, 추적관리, 감시, 강제회수, 압류와 봉인, 오염물처리기준
- ◆ 제3장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됨
 - 해외 식품업체의 점검
- ◆ 제4장에서는 기타 자금지원, 노동자보호, 예산효율성, 국제협력, 관할 규정

1.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3) FSMA 하위 규정의 제정

- ◆ FSMA는 하위 규정의 제정권을 FDA에게 부여.
 - FDA는 식품제조시설의 등록,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출국 식품제조시설의 위생인증, 신선농산물생산 안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명령(regulations: 시행규칙)과 행정지침(guidances)을 제정해야 함.
 - '식품용', '사료용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 '수입식품의 사전신고 정보', '식품 또는 사료의 행정상 봉인 및 압류명령 집행기준', '문서기록의 작성, 보존, 열람가능성 요건 규칙' 제정함.
 - 행정지침(guidances)은 FDA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
 - 사업자는 행정지침과 다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실행수단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고 수단의 합리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하에 최적의 실행수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FSMA는 예방 우선(prioritizing prevention), 감독과 집행의 강화(strengthening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대응과 복구의 개선(improving response and recovery)을 핵심전략으로 함

가. 예방 우선- 대응에서 예방으로

- ◆ FSMA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오염된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었을 때, 그리고 소비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걸리는 등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복구하는 사후조치보다 선제적인 예방조치에 우선권을 두는 접근방법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 여기서의 '예방'은 유럽에서 논의된 '사전예방'의 의미와는 다름. 유럽식품법 상의 사전예방 원칙은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의심되는 위해'의 영역(le champ des risques suspects)에도 적용.
 - '의심되는 위해'는 잠재적인 위해, 의심되는 위해, 확인된 위해, 발생한 위해와 같은 연속적인 위해의 경과 과정 중에 중간적인 위치
 - 미국법에서 '위해'는 '의심되는 위해'와 '확인된 위해'의 중간에 위치하는 위해 수준을 의미
 - 미국에서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경우나 해가 실현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과 사전예방적인 조치는 그 자체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가. 예방 우선- 대응에서 예방으로

- ◆ FSMA는 유럽식품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예방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위해도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을 함
- ◆ 실제로 FSMA는 높은 수준의 위해도와 낮은 수준의 위해도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접근방법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식품재난대응과 통상적인 위생관리에서도 위해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집행지침을 설계 및 입안하고 있음.
- ◆ FDA는 리콜 대상 식품을 섭취할 경우의 위험도를 발표

[표3] 위해도 등급

1급	섭취 시 치명적인 문제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
2급	섭취 시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3급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가. 예방 우선- 대응에서 예방으로

- ◆ 2004년부터 10년간 1급 리콜 건수는 2,706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음.
 - 2급은 27%, 3급은 8%, 미분류가 10%에 해당
 - 1급 리콜의 주된 이유는 병원균 감염(58%)과 알레르기 물질 표기 미비(30%)로 나타났고,
 - 2급 리콜의 경우 알레르기 물질 표기 미비(32%), 성분물질 표기 미비(15%) 등이 주원인이었으며,
 - 3급 리콜의 경우 표기 오류(20%)와 기타(37%) 등이 주원인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나. 수입식품의 감독 강화: 행정집행의 해외 확장

- ◆ FSMA는 해외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등록 및 인증제도를 도입
 - 식품시장의 환경이 글로벌화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성향과 영업질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의회는 연방식품행정청의 집행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FSMA를 제정하게 됨
 - 그러나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에게 국내법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라고 지적함
 - 이러한 상황에서 FSMA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 제조시설의 운영자들이 사전에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자국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미국에서도 유효한 검사결과로 인정해 주는 상호승인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나. 수입식품의 감독 강화: 행정집행의 해외 확장

- ◆ 2002년 '공중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방어 및 대응에 관한 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Response Act of 2002)을 제정
 -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제305조의 식품업체등록 및 제307조의 수입식품 사전통보제도가 있음.
 - 제305조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동물 사료 포함)을 제조, 처리, 포장, 보관하는 시설을 소유하는 자, 운영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미국 연방식품의약품청에 의무적으로 등록
 - 인터넷을 통한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등록비는 무료
 -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및 보관하는 해외시설은 대미 수출이전에 등록된 다른 시설에서 가공 및 포장 등 추가 공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록
 - 바이오테러리즘법에서는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FSMA에서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매 3년 마다, 저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 5년 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사주기를 법으로 정함 그리고 고위험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이력추적(traceability system)을 의무화함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나. 수입식품의 감독 강화: 행정집행의 해외 확장

- ◆ FSMA는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
 - 2011년과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저산성통조림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를 한 적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사가 진행되고 있음
 -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FDA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 첫째, 미국 내에 식품 및 사료를 공급하는 모든 식품업체는 2003년 12월까지 미국 식품의약품청에 시설을 등록해야 함. - 이와 같은 등록의무의 부여는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 Response Act of 2002에 근거함
 - 둘째, 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전에 FDA에 통보해야 함. 이러한 사전통보를 통해 FDA는 수입대상 식품에 대해 표적 검사(target inspection)를 실시하여 식품테러에 대응함. 그리고 식품업체가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료가 농가에서 생산된 시점부터 제조공정을 거칠 때까지의 관리담당자, 즉 생산자 및 제조자의 이름 및 기업정보, 원산지 국가명, 선박업체 등을 FDA에 통보해야 함.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나. 수입식품의 감독 강화: 행정집행의 해외 확장

- ◆ 바이오테러리즘법에 따라 모든 수입화물에 대하여 사전통보제를 적용
 - 수입화물에 대한 사전통제는 국토안보부가 관할
 - 수입업자는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통지해야 함
 - 식품뿐 아니라 식이보충제도 사전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품목에 포함
 - 신고의무자는 개인, 중개인, 위탁판매인, 수입업자, 수입대행사이며, 이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된 정보를 소지하는 자도 사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다. 대응과 복구 - 행정상 봉인 및 압류

- ◆ FDA 행정관은 의심되는 식품을 최장 30일까지 압류하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 만약 압류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압류명령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2일 이내에 청문을 소집해야 하고, 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압류해제 결정을 내려야 함
 - 해당 기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
- ◆ 2013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FDA가 직접 압류
 - 회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문제된 식품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나 인간과 동물의 사망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 또는 정보를 제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음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다. 대응과 복구 - 행정상 봉인 및 압류

- ◆ FSMA는 동 규정의 문언을 “부정불량하거나 표시위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reason to believe that such article is adulterated or misbranded)”로 개정하여, 행정명령 발령 요건을 완화함
- ◆ 압류 대상이 되는 ‘위해 가능성 있는 식품’이란 7일 이상 정상적인 운송 및 저장 상태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식품으로서, 열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냉동되지 않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말함
- ◆ 구법에서 행정명령에 근거한 압류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이때 압류조치는 20일(예외적인 경우 30일)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되었던 것과 달리, FSMA는 FDA에게 봉인·압류 권한, 영업정지명령권, 강제회수명령권, 업체등록정지명령권, 고위험 식품에 대한 기록열람 조사권을 부여함
- ◆ 다만 FDA가 직접 판매금지명령을 발령할 수는 없으며, 판매금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FDA가 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 법무성(DOJ) 소비자소송국(office of consumer litigation)에 고발하고, 법무성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영장을 발급받으면 이에 기초하여 압류 또는 회수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음. 압류와 동시에 회수를 집행할 수도 있음

4) 미국 - FSMA의 주요 개선 내용

라. 신선농식품 푸드체인을 총체적 관리

- ◆ FSMA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농업인이 신선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과 관련한 안전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의무이행을 FDA가 감독하도록 규정함
- ◆ 신선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 기준들은 안전한 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동물의 침습과 관련한 위생관리기준, 농지사용기준, 근로자의 위생기준 등을 포함
- ◆ 이러한 규범화를 통하여 식품공급망을 총체적인 연결망으로서 인식하고 생태 유기체적으로 관리하는 규제패러다임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됨

1.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5) 연방회계감사원의 개선의견

- ◆ FDA의 시정권고 및 회수명령과 관련한 집행절차의 보강
- ◆ 외국 정부의 위생점검 결과와 위생행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권고
- ◆ 외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위생검사기관을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
- ◆ 부처간 종합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기관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 식품행정업무를 통할하여 집행할 수 있는 독립행정청으로서 식품안전청 (Food Safety Agency)을 설립 제안

1.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6) 시사점

- ◆ 긴급대응
 - 위해 발생 또는 발생이 현저히 예견되는 경우 신속한 봉인과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이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감독기관에 실질적 권한부여
- ◆ 사전예방
 - ‘현저히 의심되는 위해’ 단계부터 예방조치에 들어가고, 단순히 ‘의심되는 위해’의 단계에 있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대비체제를 갖출 것
- ◆ 수입식품 안전처리
 - 부족한 행정인력을 고려하여 수출국의 검사기관의 기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고위험 농식품의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보강할 필요
- ◆ 신선농식품 푸드체인 총체적 관리

2. EU – 농식품 안전관리 기관

1) 안전관리 기관

보건식품안전총국 (DG SANTE)

- ◆ 식품안전 행정업무는 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이 담당, 4개부서가 식품안전 담당
- ◆ 직접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산하기관을 통해 교육기능을 수행

유럽식품안전청 (EFSA)

-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위해성 평가를 담당
- ◆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 통계 등은 유럽질병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가 담당
- ◆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연구혁신총국(DG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담당.

2) EU – 식품안전법령

일반식품법

- ◆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으로 통칭되는 법규 178/2002/EC는 2002년 1월 제정
- ◆ 식품규제가 일관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EU 차원에서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회원국 간 상호인정을 통해 내부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식품 관련 정의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
-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는 식품체인동물보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의 구성과 활동, 긴급경보체계(Rapid Alert System)와 같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그 밖에 회원국 간의 충돌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절차 규정

2) EU – 식품안전법령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법규

- ◆ 2011년에 제정된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법규(Regulation on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2011/1169/EU)」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영양정보 관련 규정은 2016년 말부터 시행
- ◆ 주요 내용은 식품정보에 대한 일반원칙은 물론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식품의 명칭, 성분목록, 사용법, 알코올 함량, 영양표시 등 우리나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있는 사항을 규정
- ◆ 일반표시 이외에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에 관한 사항도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정보표시에 관한 내용은 법규 1924/2006/EC에 규정
- ◆ 정보표시에 대한 일반원칙과 함께 EU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

2) EU – 식품안전법령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 ◆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법규 315/93/EEC에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에서 허용되는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치는 2006/1881/EC에서 규정
- ◆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은 법규 2010/37/EU에 설정되어 있으며,
 - 법규 2009/ 470/EC는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절차를 규정.
 - 잔류 기준 설정은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서 담당.
- ◆ 잔류농약 최대치는 법규 2005/396/EC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 또한 잔류농약치가 특별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는 0.01mg/kg을 기준으로 적용.
- ◆ EU 집행위원회는 식품첨가물, 효소, 향료, 추출 용액을 화학적 안전과는 별도로 식품증진제(food improvement agents)라는 정책 분야로 인식하여 관련 법규를 시행.

2) EU – 식품안전법령

식품위생 관련 규정 (생물학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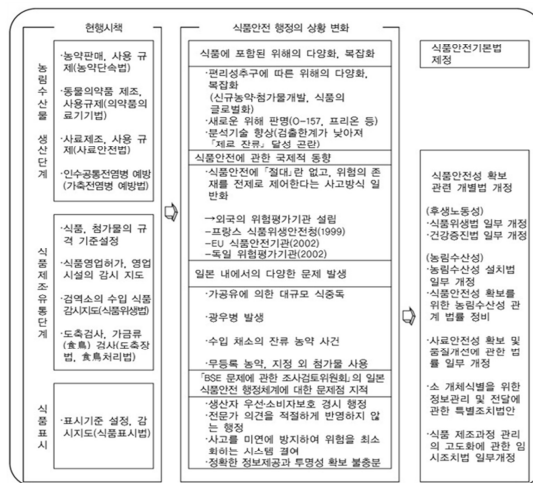
- ◆ 식품위생 관련 규정은 법규 EC 852/2004, 853/2004 and 854/2004로 규정
- ◆ 법규 852/2004/EC은 식품영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와 함께 식품영업자의 등록 및 승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개인위생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동물성 식품은 법규 854/2004/EC를 통해 동물성 식품과 관련된 기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 ◆ 미생물 기준은 법규 2005/2073/EC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과 함께 채취 및 검사에 대한 사항까지 명시
- ◆ 위생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등은 법규 2074/2005/EC에 규정

3. 일본

농식품안전관리 기관

- ◆ 일본은 2001년 9월 발생한 광우병을 계기로 2003년 4월 위험분석체계를 근간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5월에 공포하였으며,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위험분석체제로 전폭적으로 개편함
- ◆ 위해성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각 위해성 평가와 관리기능을 분리

[표4] 일본 식품안전정책체계의 변화



자료: 위탁연구를 수행한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음.

3. 일본 - 농식품안전관리 기관

식품안전위원회

- ◆ 기본법에 근거하여 내각부에 독립적으로 위험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됨

후생노동성

-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 등의 기획·실시, 검역소를 통해 수입식품에 관한 계획적인 감시지도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국 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식품의 계획적인 감사 지도 업무, 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설정, 식중독 발생 방지 감시지도의 실시 등, 식품 중 방사성물질에 관한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

3. 일본 - 농식품안전관리 기관

농림수산성

- ◆ 식료품의 안전공급 확보,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림어업자의 복지증진,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의 진흥 등을 꾀하기 위하여 위한 기관으로 식품의 생산과정과 관계된 것을 담당
- ◆ 주요 담당 법령은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 법)」,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

소비자청

- ◆ 소비자청은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 책정 및 검증·평가, 소비자 피해 방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지원, 소비자 재산 피해의 집단 보상, 소비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반 식품표시의 기획·입안 및 출입검사, 개선지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명령 등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 주요 담당 법령은 「식품위생법」, 「소비자안전법」, 「JAS법」, 「건강증진법」 등

3. 일본

식품안전법령

[표5] 일본 식품안전 법령²⁾

소관 부처	주요 법령	
식품안전위원회 (내각부)	•식품안전기본법	
농림수산업성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농약단속법
	•농산물검사법	•사료안전법
	•비료단속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JAS법
	•우해면상식중대역독물질(BSE대역 독물질)법	
	•육장농산가공경영개선훈시조치법	
후생노동성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식품위생법	•식조처리법
	•도축장법	•건강증진법
소비자청	•약사법	
	•식품표시법	

주: "약사법"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소관이지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성 장관의 권한하에 있음.
 자료: 황윤재·정현찬·한재환(2010)을 토대로 최근의 법령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

◆ 일본의 식품안전법령체계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하위법인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품질표시기준법」, 「건강증진법」 등이 있음

3. 일본

식품안전법령

- ◆ 「식품안전기본법」은 내각부 소관으로, 국민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 식품안전 관련 대부분의 하위법은 농림수산업성과 후생노동성이 관장하였으나, 2009년 소비자청 설치로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과 농림수산업성의 「JAS법」 표시기준의 기획입안과 집행에 관한 사항들이 소비자청으로 이관됨
- ◆ 종전의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표시기준 일원화를 큰 골자로 하는 「식품표시법」이 2013년 6월 제정,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식품표시기준(내각부령)이 2015년 4월부터 시행됨. 식품표시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①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구분 통일, ② 제조공장 고유기호 사용에 관한 규정 개선, ③ 알레르기 표시 규정 개선, ④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⑤ 영양 강조표시 규정 개선, ⑥ 영양기능 식품 규정 변경, ⑦ 원재료명 표시 규정 변경, ⑧ 판매용도의 첨가물 표시 규정 개선, ⑨ 통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표시 관련 규정 일부를 기준에 규정, ⑩ 표시 레이아웃 개선, ⑪ 경과조치 기간 등.

3. 중국

농식품안전관리 기관

중국은 2009년에 제정된 「식품안전법」을 토대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 중앙정부 행정기관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행정기관에 이르는 3단계의 식품안전 관련 행정조직체계를 구축

【표6】 중국 식품안전 관리 기관

```

graph TD
    A["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관련 업무의 최상위 심의·조정 기구)  
(구체적 업무는 식품안전위원회 관공실이 담당)"] --> B["중앙정부 행정기관"]
    B --> C["총괄: 위생부"]
    B --> D["신선농산물 생산: 농업부"]
    B --> E["식품 생산·가공: 국가품질감독검사감독총국"]
    B --> F["식품 유통: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B --> G["식품 소비: 위생부,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H["↓ 2013년 3월 이후"]
    I["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구체적 업무는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이 담당)"] --> J["중앙정부 행정기관"]
    J --> K["위험평가 표준제정: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J --> L["신선농산물 생산: 농업부"]
    J --> M["식품 생산·가공: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
    J --> N["식품 유통: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
    J --> O["식품 소비: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
    
```

자료: 전형진, 2014.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중국

농식품안전관리 기관

-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업무 관련 최상위 심의·조정 기구로 「식품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2월 신설. 식품 현황 및 추이 분석, 식품안전 업무 배분 및 통합 지도,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관한 주요 정책 제시 등을 담당.
- ◆ 중앙정부에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식품의약품감독 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CFDA)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며, 모두 2013년 3월 국무원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설됨. - **식품생산·가공단계의 안전관리감독 업무와 식품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
- ◆ 국가품질감독검사감독총국은 식품 관련 제품(포장 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등)의 생산과 식품 수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 - 보건식품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감독 및 조사 업무를 담당.
-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식품안전 위험평가와 식품안전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
- ◆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위생, 지방정부는 위생, 농업,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식품약품 관리감독 부서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 상부 인민정부에 설치된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이 하부 인민정부의 식품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3. 중국

식품안전법령

- ◆ 식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중 법률인 「식품안전법」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품질안전법」, 「생산물질법」, 「표준화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등 20여 개가 있음
- ◆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식량유통관리조례, 농약관리조례, 생돈도축관리조례 등 약 40개가 있고, 농업부를 비롯한 다수의 부서가 제정한 약 150여 개의 국무원 규정이 있음.

[표7]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령



자료: 전형진, 2014.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중국

식품안전법령

- ◆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여 2016년 10월부터 시행. 개정된 법은 10장 154조항으로 기존보다 50개 조항이 추가됨.
- ◆ 그 내용으로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책임 강화, 식품안전 감독 소홀 및 사고 발생시 기관별 책임회피 방지를 위해 식품안전 총괄 업무기관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명확화, 수출입식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신규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수입업체가 자국의 식품안전 법률에 부합하도록 해외 수출업체 및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 수립 등을 명시, 특수식품(영유아, 보건의품 등) 관리강화를 위해 신원료 보건식품 및 첫 수입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하고, 보건식품 라벨 등에 질병 예방, 치료효능 등에 대한 표기를 금지. 또한 **영유아 조제식품의 원료 입고에서 제품 출고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실시**, 영유아 조제분유의 제품배합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하도록 규정. 인터넷 쇼핑물의 가짜 식품, 모방 식품, 불량식품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강화,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자 식품안전사고 벌금 확대, 부적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손실배상, 식품안전 문제 유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관할 정부 담당자 처벌 등을 규정.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1. 농식품안전관리 기관

- ◆ 식품안전법제는 품목별·단계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식품에 따라 9개 소관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도 식품위생법을 위시하여 26여개.

[표8] 식품안전 관련법령 소관부처 현황

부처	법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식약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육성법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무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환경부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기획재정부	주세법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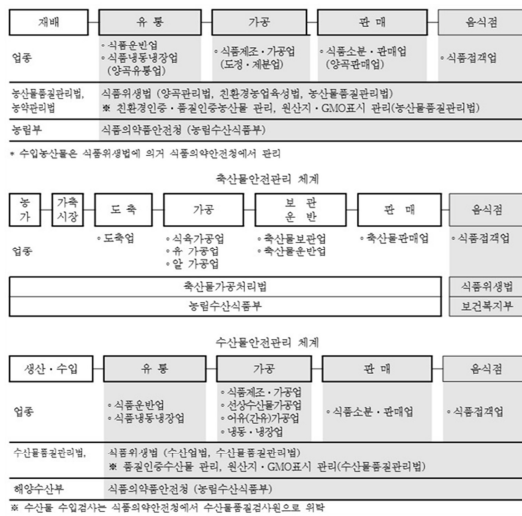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1. 농식품안전관리 기관

- ◆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 ◆ 농축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축산법 등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담당.
-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 ◆ 환경부는 수도법과 먹는 물 관리법을 관장하고 있으며,
- ◆ 기획재정부는 주세법을 담당.
- ◆ 축산식품을 제외하고 농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차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관련 각종 기준제정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표9] 식품안전관리 주제23)



◆ 농수축산물의 경우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서 관부처가 다르다. 농산물에서는 생산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가공·유통·소매는 모두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에서는 생산·수입·가공·유통·소매단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매단계에서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수입 단계는 해양수산부가, 가공·유통·소매단계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2. 식품안전기본법의 체계

1. 제정취지

- ◆ 식품안전기본법은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위해식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짐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생산·판매의 금지 등 위해 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 ◆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됨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2. 식품안전기본법의 체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법 제6조)

- ◆ 식품안전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법 제7조 이하)

- ◆ 다수의 부처가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이 각 부처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임.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다. 사전예방 차원의 긴급대응 체계의 구축과 추적조사 (법 제15조 이하)

- ◆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된 규정.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위해 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사전예방'의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음.

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위해성 평가관리 (법 제20조)

- ◆ 과학적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에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그 밖에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마. 식품안전정보공개 (법 제24조)

- ◆ 식품 등의 안전에 대한 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간에 정보의 공유를 강화한다.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바.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법 제26조)

- ◆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전단계의 규정으로 평가된다.

사. 소비자 참여 강화 (법 제28조 이하)

-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도모한다.

3. 현행 식품안전법령 체계와 주요내용

3. 기본법의 문제

1.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이며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농식품에 대한 **사전유해성 검사 필요**
 - 그 밖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력추적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3. **통합된 관리주체의 필요**
4. 실질적 소비자 권리의 강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5. 객관적인 유해성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의 고도의 **독립성 확보**

4. 시사점

1. 푸드체인의 **일괄적 관리체계**의 구축

- 푸드체인의 단계마다 관리체계가 다를 경우 사각지대에서의 관리부재가 발생할 수 있음

2. 관리기관의 **일원화**

- 미국의 경우 FDA가 80%의 유통량을 일괄 관리
- 유럽, 중국은 일괄식품관리체제 유지
-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위원회**를 정점으로 한 관리체계
-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본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을 고려

4. 시사점

3. 위해요소의 **선제적 긴급예방** 대응

- 모든 농식품에 대한 사전적 위해요소 검사는 **식품산업의 육성이나, 비용편익면에서 쉽지 않음**
- '예견되는 위해' 단계에서의 안정성 검사 - 유럽 수출 고려
 - 미국의 경우 '현저히 예견되는 위해' 에서 검사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검사기관의 **역량강화**와 **국제협력 강화**

- 미국이 시행중인 **수출국의 식품제조시설에 관한 사전 예방적 등록제도** 고려

4. 시사점

5. 소비자의 **안정성 정보제공**의 확대

- 행정관청의 관리감독만으로는 **농식품 안정성이 담보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음
- 소비자에게 농식품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
-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 감독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3. 제1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주요 토론 요지

- 2019년도 제1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에서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법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되, 농식품부에서는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를 위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축산물도 동일한 체계로 수행하고 있음.
-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개선·발전시키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 강화, PLS 전면 시행,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9년 “생산단계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철저히 관리하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방향으로 하여, 1) 농산물 PLS 연착륙 지원, 2)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3)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확대를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이러한 정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계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통한 협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함.
- 또한, 2019년 초에도 발생하였던 단체급식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정부 부처에서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생산자·소비자 간의 소통과 협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 정부, 연구 기관, 전국의 각 대학 등이 유기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식품 안전성 조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농식품 안전관련 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제도나 법이 식품안전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며, 제도나 행정의 변화보다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임.
- 국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소비자원 등이 있으나, 이러한 수준으로는 소비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며, 해외 주요국처럼 소비자청 등을 설립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2019년 제1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어질 제2회 및 제3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에서도 다양한 발제와 논의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안전관리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다양한 논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수행될 것임.

제 3 장

2019년 제2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 ◆ 일시: 2019년 9월 27일 (금) 09:30 ~ 12:00
- ◆ 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ktx 김천구미역 집합 후 이동)
- ◆ 주요논의내용
 - 주요 농축산물 위생관리기관 방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안전관리 주요 역할 및 운영 의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분석과 및 성분검정과 등 시험연구소 견학

◆ 세부일정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09:45	15'	○ 버스로 이동 (김천구미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9:45~10:30	4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 역할 및 시설 소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 이상목서기관 등)
10:30~11:15	4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견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11:15~11:30	15'	○ 휴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30~12:00	30'	○ 주요내용 토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00~12:10	10'	○ 버스로 식사장소 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역 인근 식당)	
12:10~13:10	60'	○ 점심식사 후 KTX역 개별 이동	

* 사회: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부연구위원

* 계획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함께 방문예정이었으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생략됨.

주제발표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 소개

- 이상목 서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 소개

『행복한 농장, 건강한 식탁』을 위한 현장농정

201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조직 및 기능


기능 및 역할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농관원의 역할 변화




▶ 농산물 검사 위주
1990년대 이전

1909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수출현미 검사 실시




▶ 농산물 검사+품질·안전관리
1990~2006년

199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으로 개칭



▶ 품질·안전관리+농가 소득안정 지원
2006년 이후



▶ 농가 소득안정 확대·직불제 총괄
향후 확대·강화 기능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현장농정 조직으로 우뚝**

2

농관원 조직 및 기능

조직도

기구 ▪ 본원 7과 1팀, 시험연구소, 9개 지원, 117개 사무소

원장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과
- 소비안전과
- 품질검사과
- 원산지관리과
- 인증관리팀
- 맞춤형농정과
- 농업경영정보과

시험연구소

9개 지원, 117개 사무소

정원 ▪ 1,433명(본원 123, 시험연구소 56, 지원·사무소 1,254)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연구직	6급 이하
1,433	1	1	14	10	158	17	1,232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규직이 증원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등 1,573명 채용

3

농관원 조직 및 기능

중점 추진 방향

비전

임무

중점 추진 사항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

국민에게 안전 농식품 공급,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 지원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사전예방적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친환경, GAP 인증품 신뢰 제고
- 원산지표시 관리 과학화, 효율화

걱정없이 농사짓는 나라

- 공정하고 정확한 농산물 품질검사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품질 향상 및 활용 확대
- 꼼꼼한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사후관리

현장 · 소통 · 혁신 농정 강화

- Field(현장중심)
- Innovation(업무혁신)
- Responsibility(책임행정)
- Sympathy(공감농정)
- Trust(무한신뢰)

*21개 법령, 40개 단위업무

추진기반

4


고품질 · 안전농식품 생산 · 관리

농산물 안전관리

엄격한 농산물의 유해물질 조사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조사대상 유해물질

- ▶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식중독세균
- ▶ 곰팡이독소, 방사능, 항생물질, 이물질(기생충란) 등 기타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절차

시료 수거 및 의뢰

주산단지 전통시장 등
(지원, 사무소)

→

유해물질 분석

잔류농약 등
(정밀분석기관)

→

부적합농산물조치

폐기·출하연기 등
(지원, 사무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 국내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 가능한 농약 성분에 대한 농산물 별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이 없는 경우 예외없이 **일률적 0.01mg/kg 적용**

꼭! 지켜야 할 액션 사항 5가지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3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5

불법 필수입 농약이!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5


고품질 · 안전농식품 생산 · 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관리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제도 개요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 보존하면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절차

신청 →
 심사(서류·현장) →
 인증서 교부 →
 사후관리(생산·유통)

| 사후관리

- ▶ 생산과정조사 : 재배포장, 영농기록, 재배과정 등 인증기준 준수여부
- ▶ 시판품조사 : 유통중인 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

6


고품질 · 안전농식품 생산 · 관리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농식품 공급

제도 개요


▶ 농식품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 · 세척 · 건조 · 선별 · 절단 · 조제 · 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절차

신청서 제출
(농업인) →
 인증서발급 및
부적합통보
(인증기관) →
 인증농가 사후관리
(인증기관, 농관원)

| GAP 장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농작, 유해 미생물 등의 위해요소 관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환경 부진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7

고품질 · 안전농식품 생산 · 관리

농산물 가공품 인증 관리

식품산업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기준 마련

<p>전통식품 품질인증</p>  <p>인증품목 총 85품목 (한과류, 메주, 청국장 외)</p>	<p>술 품질인증</p>  <p>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리큐르,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p>	<p>산업표준(KS)인증</p>  <p>농축산 199품목 (식빵, 콩기름, 설탕 외)</p>
---	---	---

식품의 **품질향상 ·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

8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기본 원칙

▶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쌀, 김치 류 등 원산지 표시




➔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관리대상 국산농산물 220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가공품 257품목

9

맞춤형농정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농업인소득안정과 맞춤형농정 추진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 농지정보
- 가족사육정보
- 영농상황 등

+

등록

=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안정

이동민원실 운영



농업경영체등록 상담



농업경영체 현지 실사



10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직접지불제 추진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 보전

발농업직접지불제
자금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경관 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우리 농업의

力

직접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11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전담 기관

**유통의
투명성**

**부정 유통행위
단속**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영농비용 경감 효과**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 소비자와 함께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제발표 2.
농산물 안전성 조사
- 이철호 사무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식품 안전포럼 자료

걱정 없이 안전 식사
안심 안전 하고 소비 안전 하는
나라

농산물 안전성 조사

2019. 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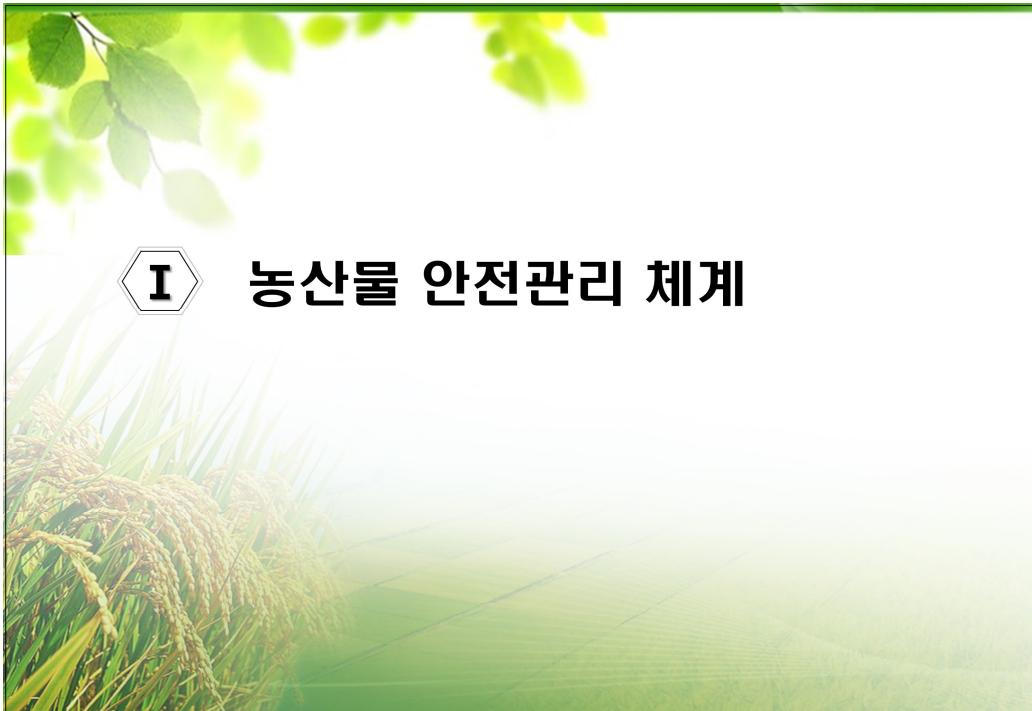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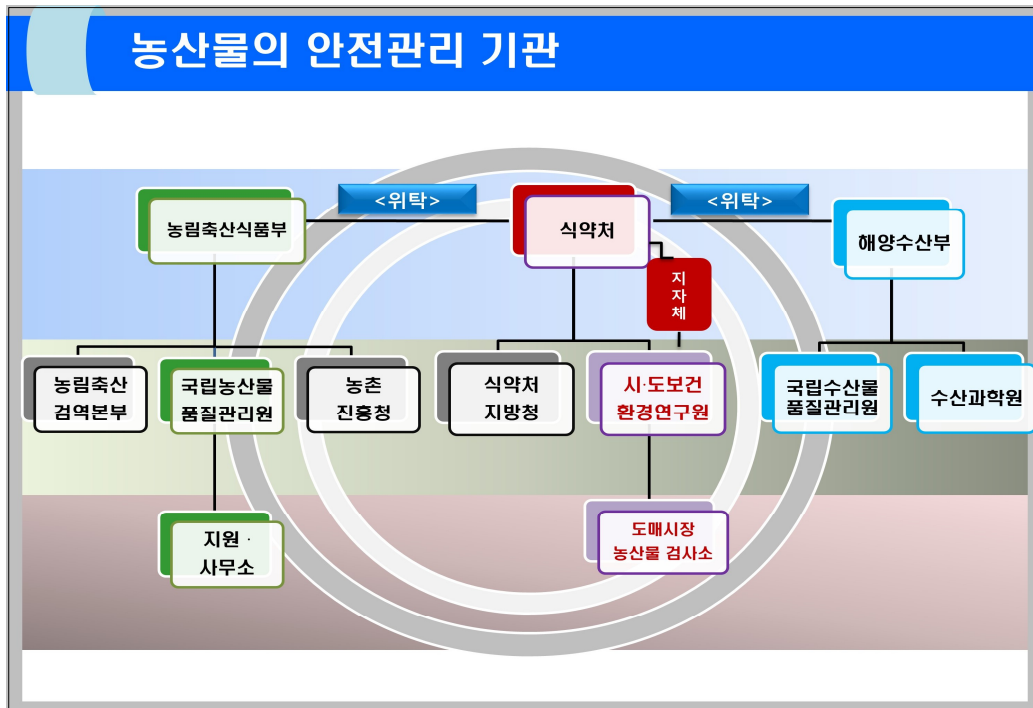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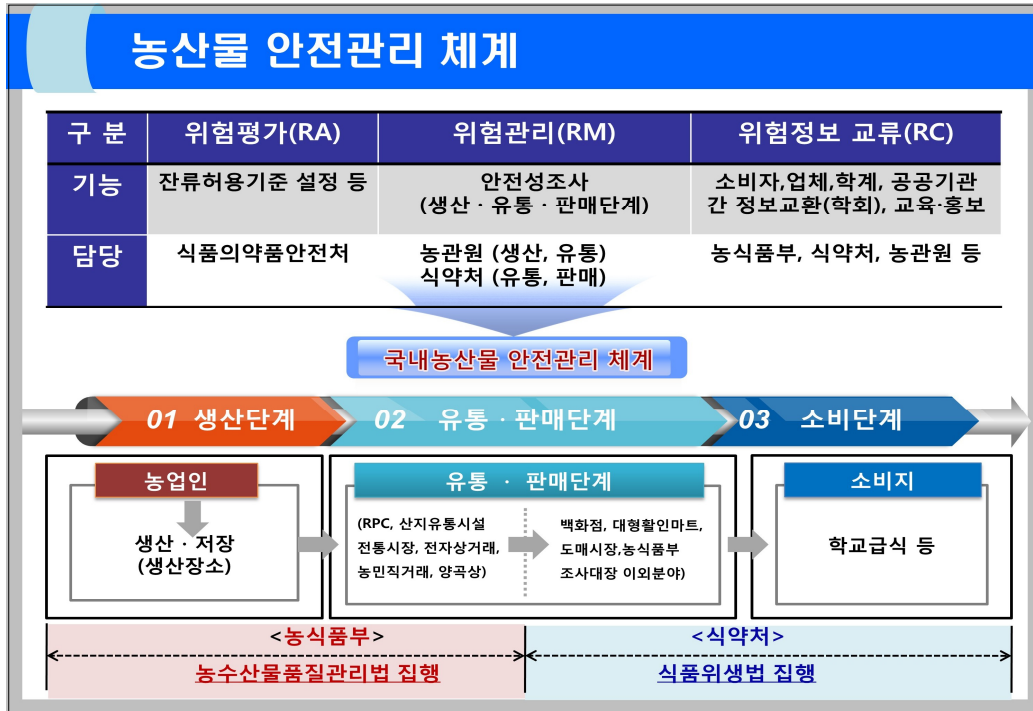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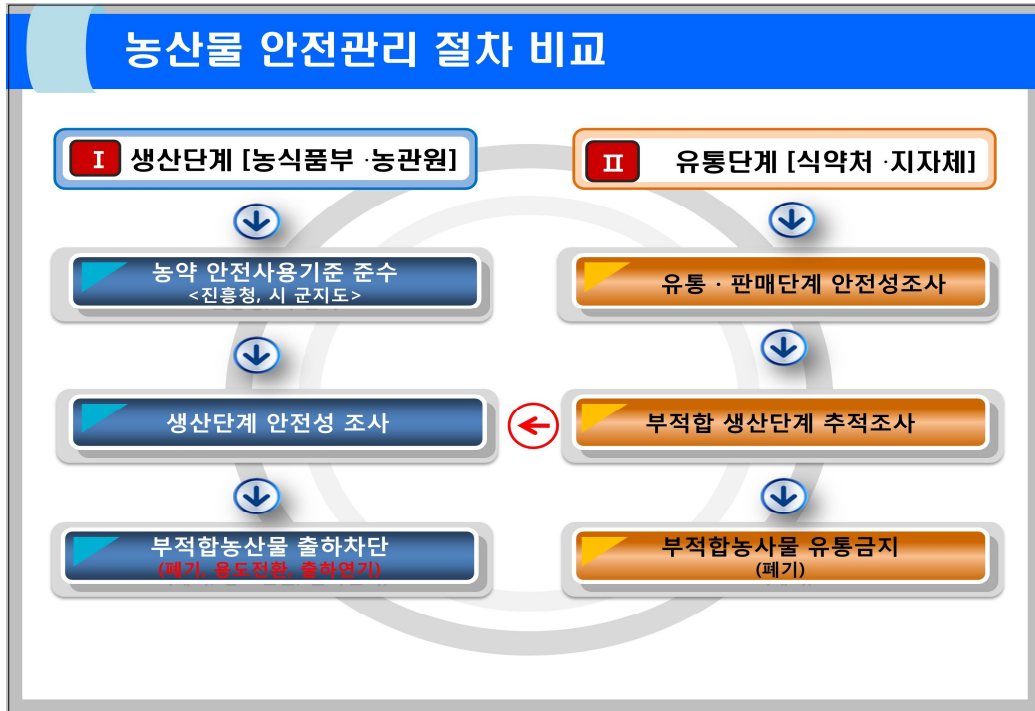
- I**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 II** 농산물 등 안전성 조사
- III** 안전성 조사 주요 추진 실적
- IV** 향후 안전관리 추진 방향



I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목적

사전에방조사

- 생산·유통단계에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유통단계 : RPC, APC, 전통시장, 양곡상,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

수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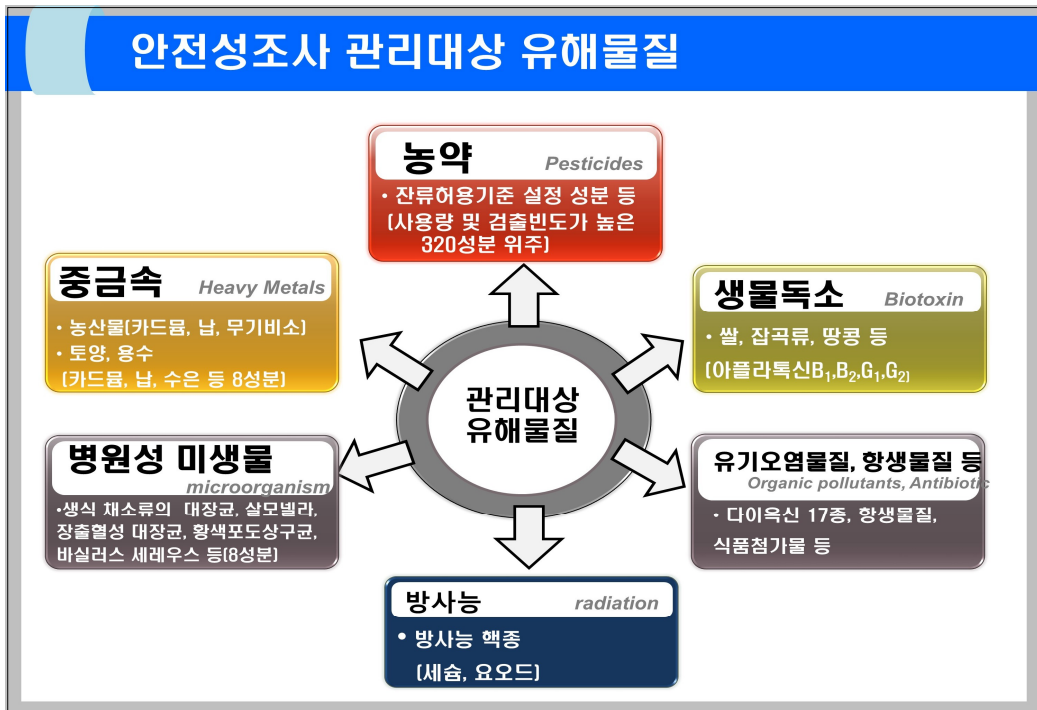
- 농업정책사업 안전성조사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
- 로컬푸드, 학교급식, 인증농산물, 수출농산물, 인삼, 직불제, 지역특산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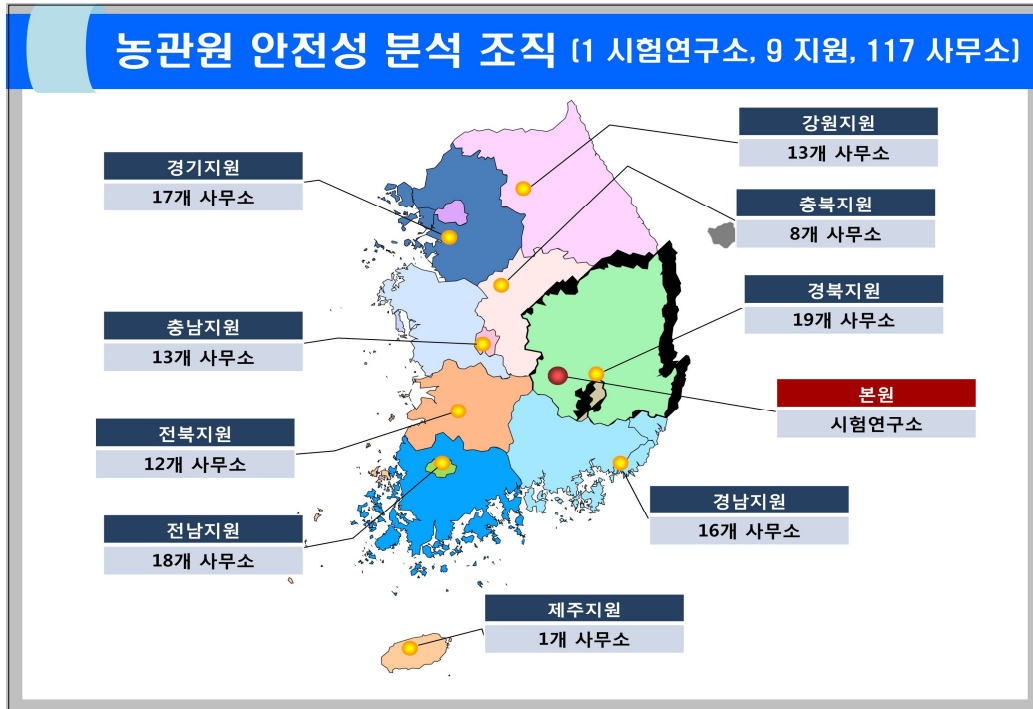
안전성 향상

- 유해물질의 과학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성 향상에 기여**
- 유해물질 실태조사, 유해물질 분석기술 개발 등

안전성조사 추진경과

- 1995년 유기재배 인증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 / 잔류농약 36성분
- 1997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신설
-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및 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개정고시(농림부)
- 2000년 생물독소(곰팡이독소) 분석 추가
- 2001년 중금속 분석 추가 / 잔류농약 80성분으로 확대
- 2002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안전성조사 국가·지방공동사무
- 2006년 잔류농약 140성분으로 확대





조사결과 부적합농산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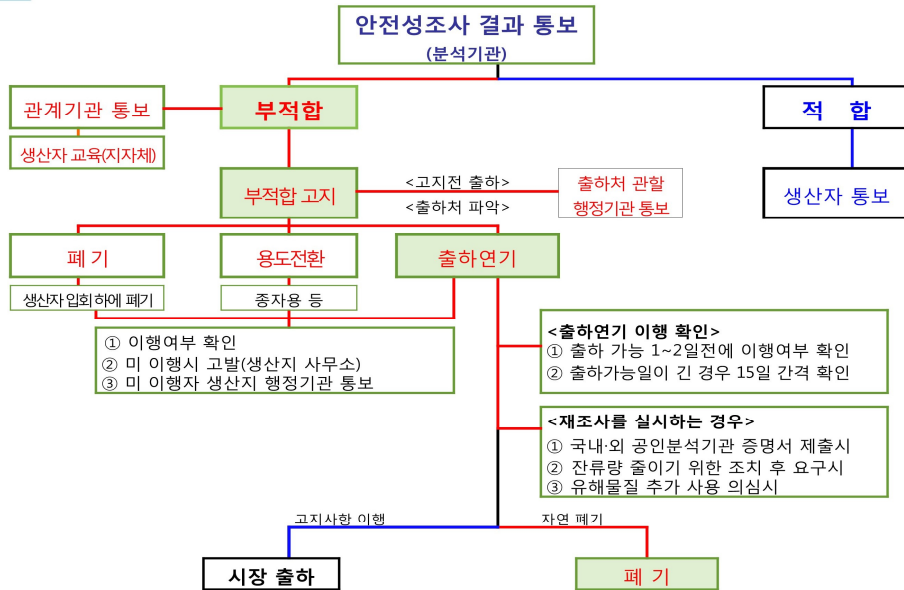
생산단계 부적합농산물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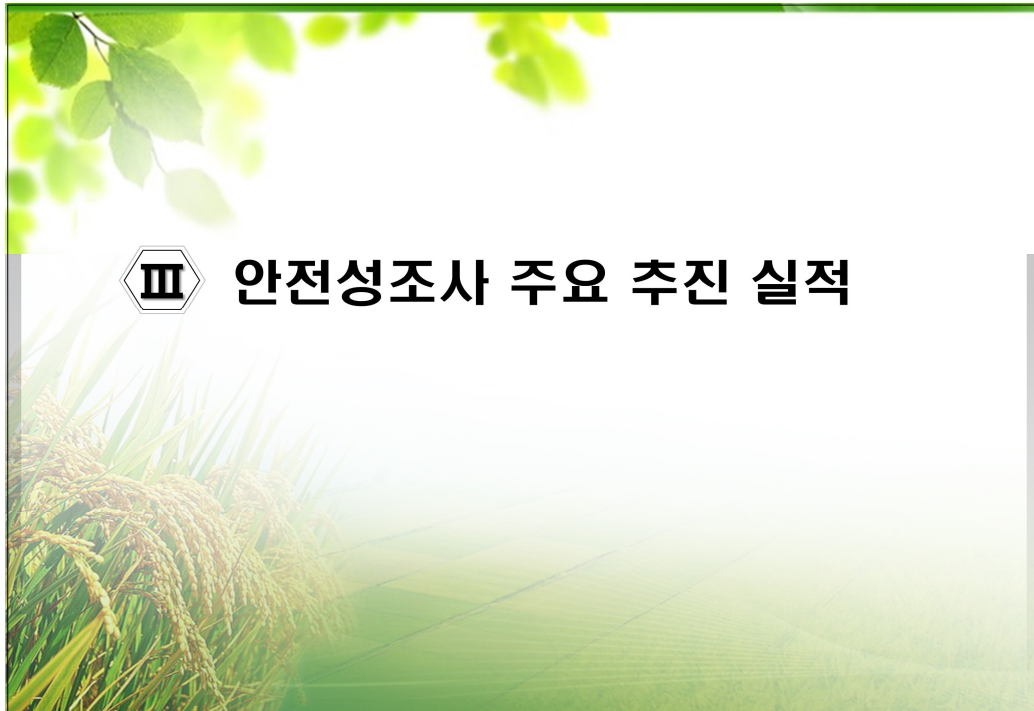
- **출하연기** : 유해물질이 분해·소실되어 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여 식용이 가능한 시기까지 『출하연기』 (안전성 확보기간)
- **용도전환** : 사료용 또는 공업용 원료로 「용도전환」
- **폐기** : 출하연기나 용도전환 할 수 없는 경우 「폐기」

부적합농산물 생산자 특별관리

- 부적합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안전성 교육 실시**(시·군)
- 추후 안전성조사 시 **우선조사**

생산단계 부적합농산물 조치 절차





Ⅲ 안전성조사 주요 추진 실적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시장출하 차단

생산단계에서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농산물** 은 시장 출하를 차단

2019년 현재 부적합 468건 중

- ▶ **출하연기** 완료 후 다시 분석을 통해 시장에 출하 : 69건
- ▶ **종자용으로 전환** 2건
- ▶ 안전성확보가 어려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 218건

시중 출하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생산 단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중금속 안전관리 실적

2001~2005년

● 2000년 쌀에 카드뮴 허용기준(0.02mg/kg) 설정

- 환경부, 농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토양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농경지를 대상 쌀에 대한 중금속 조사 실시
- * 2001~2002년은 농림부 수매폐기, 2003년 이후는 지자체 수매폐기

2006 ~ 현재

● 2006년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여 중금속 안전관리

- (농식품부) 안전성 조사, (환경부) 폐광지역 농지 등 환경조사 (지경부)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 (지자체) 부적합 농산물 수매 폐기
- * (농어촌공사) 2010년 폐광산 지역 중 추가오염우려(2~4km) 농지 조사

주요 실적

- 쌀 카드뮴 안전성 조사 (2001~2005)
 - 628건 조사, 90건 부적합(14.3%), 전량 폐기로 시중 유통을 차단
- 폐광산 지역 등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중금속 조사 (2006~)
 - 37,468건 조사, 856건 부적합(2.3%)
 -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

사전에방적 식중독균 모니터링 실적

생식 채소류 식중독균 모니터링 (2003 ~)

● 생식 채소류 및 가축 매몰지 주변 농산물 식중독균오염 모니터링

- 검출된 농가는 재배,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오염저감 등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결과 통보 및 지도

* 주요 검출성분: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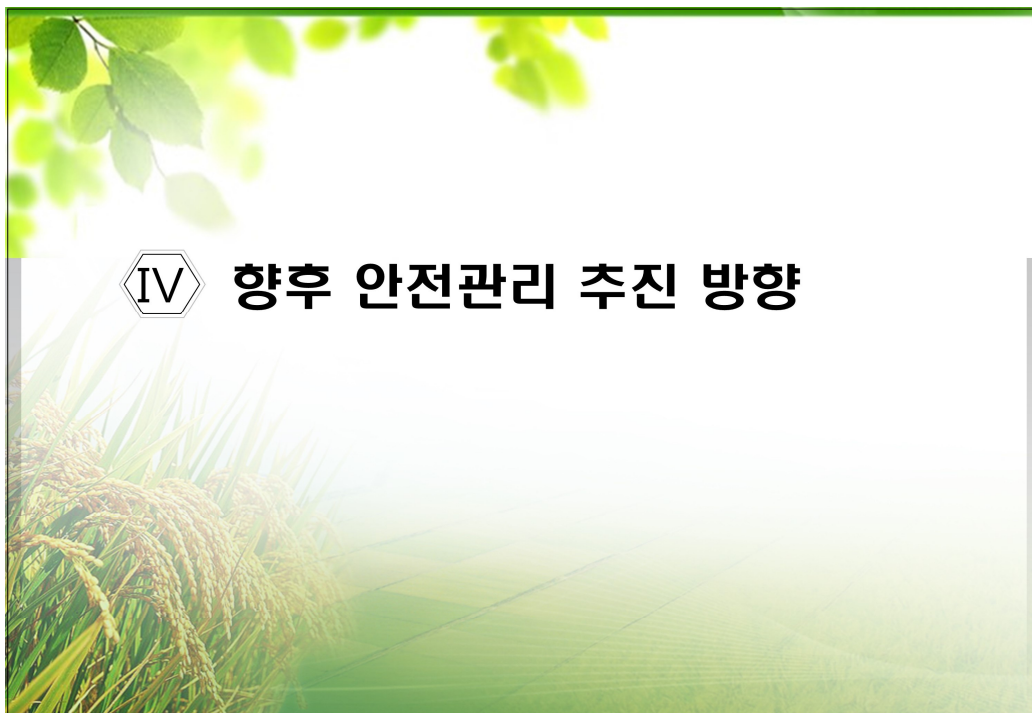
- ('16년) 700건 조사/83건 검출, ('17) 704/125, ('18) 401/84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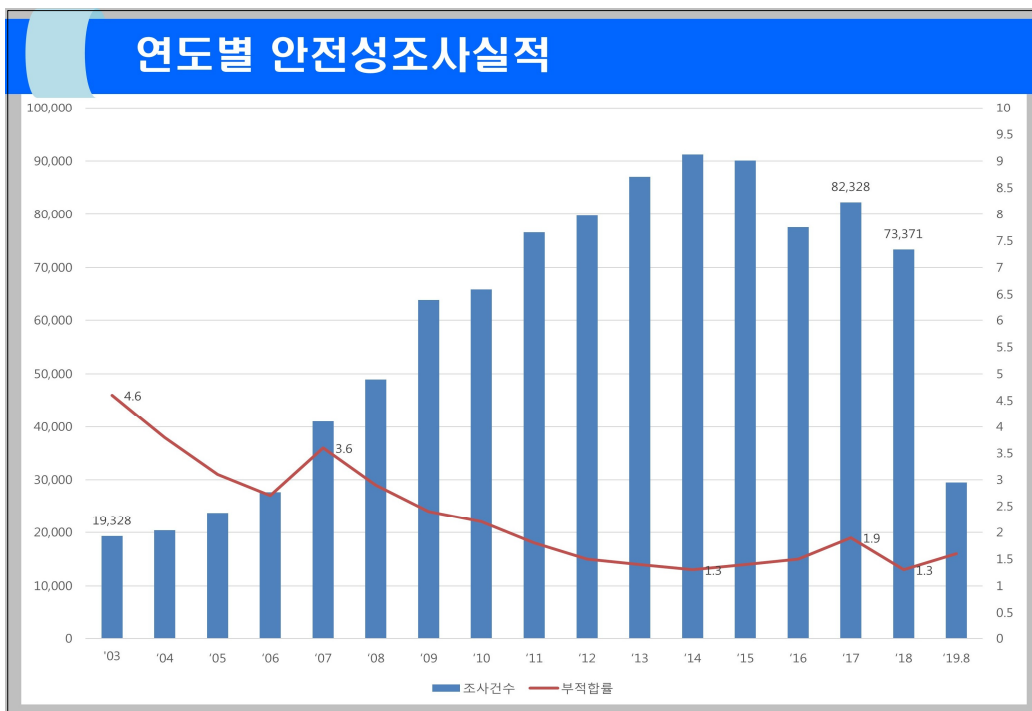
● 시설재배 등 농업용수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농가와 지자체에 통보

* 6년간 355건 분석/ 1건 검출/ 재배 농산물(오이, 양배추, 토마토)은 검사결과 불검출



IV 향후 안전관리 추진 방향



안전관리 추진 방향

식료품이
오늘날처럼
안전했던 적은 없었다
또한,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불안했던
적도 없었다.
이유는 不信이다

- 칼 하인즈 슈타인 뮐러 저, 기술의 미래, 상상 그 너머의 세계(2007.) -

안전관리 추진 방향

농업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 안전성조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지원 확대
- 농업정책(직불제 이행관리)과 연계한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추진

- 소비자의 안전성 관심분야에 대한 소비자단체 합동 안전성조사
 - 중앙 및 각 지역별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소비자 관심분야에 대한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 능력 확보

- 잔류농약 분석법 확대(400성분 이상 분석능력 확보) 등 유해물질 최신 분석법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 능력 확보
- 재배환경(농지, 용수, 자재)에서 농산물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안전관리 추진 방향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제2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주요 토론 요지

- 2019년 제2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에서는 농식품 안전관리를 주요 업무로 수행중인 정부 주요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 계획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으로 인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만 방문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99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 후 농산물 검사, 품질 및 안전관리, 농가 소득안정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되고 있음.
- 2019년 1월 1일부터 전격시행된 PLS를 비롯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세균 등의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과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1) 농산물 안전관리,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관리, 3)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확대, 4) 농산물 가공품 인증 관리, 5)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6)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7) 직접지불제 추진, 8)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 역할 등에 대한 소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향후 안전관리 추진 방향 제시, 실험실 및 시스템 소개 등을 거쳐 농식품 안전관리의 주요 정책방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운영방향, 차세대 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신식품시장의 안전관리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 기존에 이루어지던 생산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정책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출됨.
 - HMR 식품이나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 농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소비 트렌드와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도 적극 반영 필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과거 혹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요 쟁점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성 관리가 필요함을 공유함.
 - 농약 등 농산물 화학물질 관리 중심에서 미생물·바이러스 연구·관리 중심으로의 안전관리 중점분야 변화 필요
 - 지역 농산물, 즉 로컬푸드를 GAP 등 안전관련 국가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육성·발전시킬 필요성 대두
 - 배양육, 대체육 등 새로운 분야의 신식품 영역과 푸드테크를 활용·반영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검역본부 등 농·축산물 위생관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기법, 장비 등의 발전이 매우 빠르는데, 관련 학문을 배우는 대학의 인력들은 이러한 최신 기법과 장비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쉽지 않은 현실임.

- 향후 국내 농·축산물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학계 간의 적극적인 소통,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할 것임.

제 4 장

2019년 제3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 ◆ 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 15:00 ~ 17:00
- ◆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Seminar Room A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20층)
- ◆ 주요논의내용
 - 국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바른이해와 발전방향
 - 농업의 공익적가치창조를 위한 GAP활성화 방안

◆ 세부일정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5	15'	○ 개회사 및 인사말씀	정덕화 위원장
15:15~15:45	30'	○ 발제1 [국가 농식품안전관리의 바른이해와 발전방향]	(사)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공동대표
15:45~16:15	30'	○ 발제2 [GAP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가치창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16:15~16:55	40'	○ 자유 토론	정덕화 위원장
16:55~17:00	5'	○ 폐회	

* 사회: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1.
국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바른이해와 발전방향
- 조윤미 공동대표((사)소비자권익포럼) -



20191126_농식품안전정책포럼

**국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바른이해와 발전방향**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1. 식품안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1

- 국가의 인증제도에 의해 관리된 원료와 가공품은 모두 안전하다 ; **잘못된 인식**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만 지키면 인증이 가능한 제도는 “생산, 제조관리제도”**


농식품국가인증 중에 안전인증은 GAP와 HACCP

농산물우수관리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를 사전예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안전관리 체계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까지 축산물을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여 중점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식품안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2

- 어떤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라 할지라도 일부라도 오염된 원료나 가공품은 100% 안전하지 않다
 - 유해 중금속인 비소가 만약 기준이 50ppb인데 45ppb가 오염되어 있는 쌀로 지은 밥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식품에 합리적인 이해

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면 안전하다!



식품안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3

- 농약을 한번이라도 살포한 농산물은 100% 안전하지 않다
 -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제초제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 그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100% 안전하지 않다.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 “농약이 있다 없다”의 이분법은 잘못된
- 농약안전사용기준으로 농약관리
-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에는 농약이 없거나 있어도 정부의 허용기준 이하로 잔류되면 100%안전한 농산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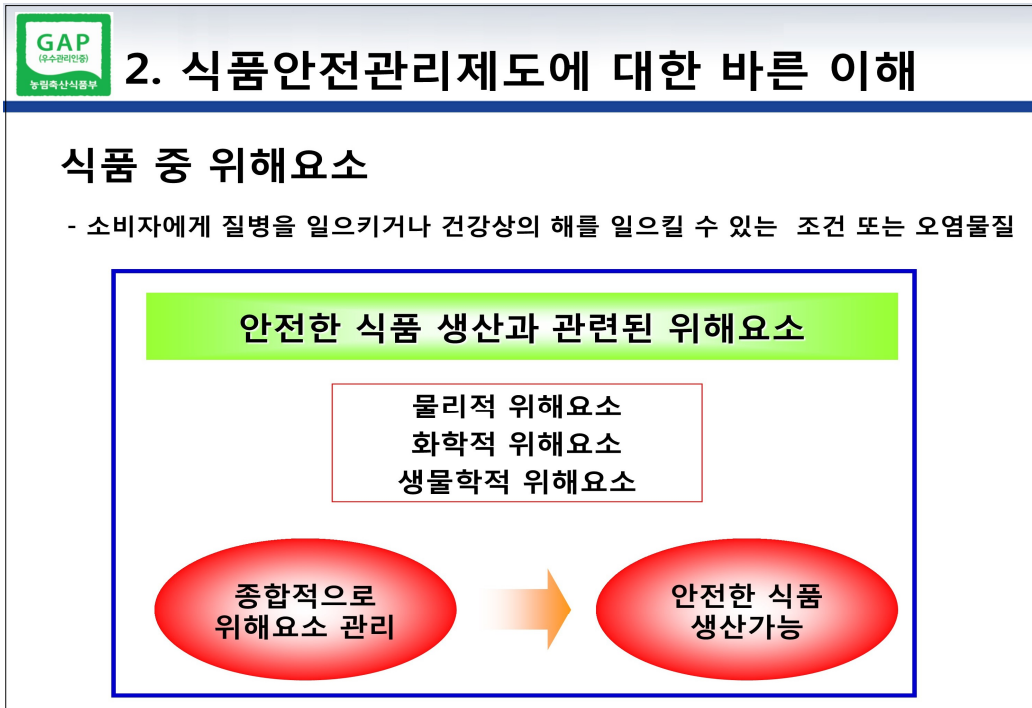



식품안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4

- 최근 5년 간 원인물질별 식중독 환자 발생 비중은 유해미생물 78.3
- 유해미생물 중 노로바이러스 26.8%, 병원성대장균 20.7 순

< 원인물질별 식중독 발생 현황('14.~'18.) >


원인물질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합계	비율(%)
유해미생물	6,853	4,865	6,068	4,896	6,542	29,224	78.3
자연독	4	21	6	0	5	36	0.1
화학물질	0	0	0	0	0	0	-
불명	894	763	1,088	1,085	919	4,749	12.7
진행중	3,336	0	0	0	0	3,336	8.9






식품안전관리제도란?

- 위해요소를 원료의 생산, 가공공정, 포장 및 유통과정중애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생산된 원료나 가공품에 위해요소가 없거나,
-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나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

- 가공식품의 안전성(식약처): **HACCP**
- 식품원료의 안전성 : 축산물(식약처),수산물(해수부): **HACCP**
농산물(농식품부): **GAP**로 관리




현재 사용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 한글명칭


가공품(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HACCP: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수산물(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기준에서
수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잠정 결정)
 농산물(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준)




현재 사용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의 로고



<가공품, 축산물 HACCP> <축산물안전관리통합인증> <수산물 HACCP>



<농장, 집유장, 도축장 HACCP> <농산물 GAP>




현재의 정부 식품인증제도중에 가장 혼란과 오해가 많은 정책은?

농산물의 정부 인증제도임:


원인:

- 정부의 잘못된 정책홍보와 운영
- 이해관계자들의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오해, 정략적 이용
-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사고




GAP와 친환경제도의 차이

- **친환경 제도** : 환경을 살리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법
(친환경관리인증기준 적용만으로 가능)
- **GAP** :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안전관리 제도
(농산물우수관리기준과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준비로 가능)




각종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특징 (HACCP와 GAP의 구성)

선행요건(농산물우수관리기준)과
HACCP프로그램(위해요소관리계획서)준비로 구성




GAP제도란?

국가 식품안전관리제도 가운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중심제도




가공품
안전관리


→




농산물
안전관리




- GAP제도는 손 잘 씻고, 정리정돈 잘하여 깨끗이하는 제도
-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준비하여 관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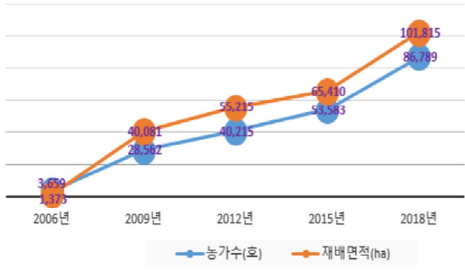




GAP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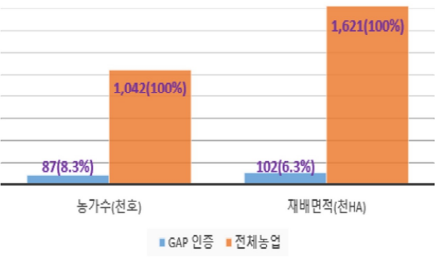
❖ GAP 농가수 87천호(전체 농가의 8.3%), 인증면적 102천ha(6.3%)

GAP 인증 현황('06~'18)



연도	농가수(호)	재배면적(ha)
2006년	3,670	1,175
2009년	40,001	28,592
2012년	46,215	56,215
2015년	53,583	65,410
2018년	86,789	101,815

전체농업 중 GAP 인증 비중



구분	GAP 인증	전체농업
농가수(천호)	87(8.3%)	1,042(100%)
재배면적(천ha)	102(6.3%)	1,621(100%)



3. GAP와 PLS의 바른 이해

GAP에서의 농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

- 등록된 농약사용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 그 결과 생산된 농산물에 농약이 없거나
있어도 정부가 정한 잔류허용기준이하로 잔류
-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 생산
- PLS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농약관리 요구




PLS(Positive List System)의 도입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해당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 ppm)**을 적용하여 각 농약들의 일일섭취허용량(ADI) 범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 적용



PLS에서의 농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 농약의 오남용금지
- 농약은 등록된 작물에만 판매하고, 사용
- 농약의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를 반드시 지킴
- 농약의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의 사용금지


- **GAP의 합리적으로 운영으로 → PLS문제 해결**



GAP/PLS에서의 농약관리 방향


- PLS적용방향과 **GAP**의 농약사용기준이 동일함
- **GAP**의 올바른 적용으로 PLS문제 적극 대응
- **GAP는 정부가 PLS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온 제도**


올바른 농약선택과 사용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 공급



4. GAP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

- 소비자가 먼저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어야 함
- GAP는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무라고 농업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제도임을 알고 소비자가 먼저 GAP농산물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
- GAP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GAP농산물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함






맺 는 말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제도는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적용과 **위해요소**관리프로그램의 준비와
 실행으로 가능, 즉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제도:

HACCP와 GAP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2.
GAP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조
- 김연화 회장((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



GAP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조

2019년 11월 26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 연 화



목차

-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 02** 농업의
공익적 기능
- 03** GAP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역할
- 04** 맺음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2

01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바른 정보제공과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합리화 추진 및 소비·환경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전문소비자단체입니다.

비전 및 미션

우리의 미래상


소비자가 행복한 사회

우리의 활동목표


 사람 중심의
소비자 운동


 소비자의
권리 찾기


 사회적
약자 보호


 시장의
공정과 투명

설립근거

「소비자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 소비자 단체로 등록

연혁

- 1994년 | 12월 8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개원
- 1995년 | 3월 1일 재정경제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 1999년 | 6월 24일 재정경제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
- 2000년 | 3월 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회원단체로 등록
- 2003년 | 5월 2일 비영리 민간단체 추가등록 (여성권익보장 및 사회참여)
- 2007년 | 3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 2015년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로 단체명 변경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3

00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00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개

▶ 단체현황 및 주요 활동

- 조직현황 : 12개 지부
- 회원현황 : 전국 30,000명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소비자공익네트워크
서울본부-4개지부
경북소비자공익네트워크
울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의 대변인 - 1572소비자상담 - 일몰·장산과 분쟁조정위원회
불안전, 시가지다 등 끊임없는 소비자 문제와 이슈 개발
지속가능한 소비의경시의 구축
장보제공 등 연령있는 소비자 육성
시장 모니터링 및 불공정 행위 검시
국가 소비자 정책 발안에 업조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4

01
 GAP제도와
위해요소관리

01 GAP 제도의 도입

증산 정책

고품질 농산물 생산정책

안전 농산물 생산정책
: GAP제도의 도입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5

01 GAP란?

01

GAP제도와
위해요소관리

정의

HACCP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써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 될 수 있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생산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



살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6

01 GAP란?

01

GAP제도와
위해요소관리

특징

- 농림부의 농산물 생산 관련 제도 중 HACCP원리에 기초하여 물리, 화학, 생물학적 모든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유일한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 농업인 스스로가 정부의 지원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도
- 농촌에서의 사전에 위해요소 관리를 함으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제도



살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7

01 GAP와 친환경제도의 바른 이해

01

GAP제도와
위해요소관리

- **친환경 제도**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지속가능한 **국제적 농법**
(친환경관리인증기준 적용으로 가능)
 - ☞ 친환경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예산과
인력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함
- **GAP**는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
(농산물 우수관리기준 적용과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 준비)



한국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8

01 GAP와 위해요소관리

01

GAP제도와
위해요소관리

GAP는 농산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안전관리제도임

★ 따라서 **위해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이 매우 중요함



한국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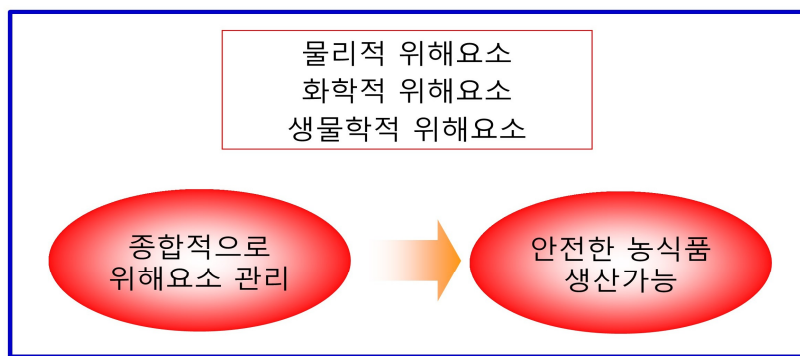
9

01 위해요소의 이해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안전한 농식품 생산과 관련된 위해요소



01 <화학적> 위해요소의 이해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GAP에서 관리되는 주요한 화학적 위해요소

-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과 같은 환경오염물질
- 곰팡이 독소
-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성장호르몬 물질
-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



01 <화학적> 위해요소의 이해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GAP에서의 화학적 위해요소 관리방법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사용배제
- 적절한 재배지 선정
- 공장 주위 배제로 인한 중금속 오염 줄임
- 재배환경, 수확 후 처리 환경의 적절한 관리



<부적절한 환경관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12

01 <물리적> 위해요소의 이해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GAP에서 관리되는 주요한 물리적 위해요소

- 유리,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이물질을 포함하며,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장애(질병 또는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유래의 **이물**(주로 경화성 이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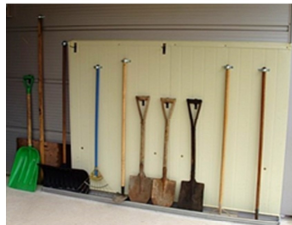
01 <물리적> 위해요소의 이해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GAP에서의 물리적 위해요소 관리방법

-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전량 폐기
- 농약병의 폐기 시 별도의 장소에 보관 후 전량 수거 및 폐기
- 농장(농기구)의 정리정돈
- 관리장비 구비



<적절한 농장 주변 환경 정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14

01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이해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GAP에서 관리되는 주요 시료별 생물학적 위해요소

구 분	위해요소
용 수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여시니아균
토 양	대장균, 대장균O157, 바실러스균,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리스테리아균, 클로스트리디움균
개인위생	대장균, 바실러스균, 황색포도상구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15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01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이해

01 위생동물





쥐에 의한 피해
 ☞ 흑사병(pest), 이질, 살모넬라 식중독, 서교열, 바이러스성 질환 : 유행성출혈열

파리에 의한 피해
 ☞ 파리의 피해는 전염병과 기생충 디프테리아, 결핵,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소아마비
 파리, 전체부분 세균배양 결과

바퀴에 의한 피해
 ☞ 소화기계 전염병, 디프테리아, 폐렴, 결핵 등 호흡기계 전염병, 피부병 질환 및 기생충 질환 등
 바퀴벌레, 다리와 날개 부분의 세균배양 결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16

01
 GAP 제도와
 위해요소관리

01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이해

GAP에서 관리되는 주요 시료별 생물학적 위해요소

- 재배지 선정 시 상습 침수지역을 피함
- 수확 용기 세척 후 사용
- 감기, 몸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수확 작업에서 제외
-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할 때 위생장갑 착용
- 작업이 마친 후 작업대와 작업장 세척/소독





<적절한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17

01 GAP와 위해요소관리

01

GAP제도와
위해요소관리

GAP제도는...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및 수확 후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위해요소를 관리할 뿐 만 아니라,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조성함

단순히 안전 관리된 농산물 생산 뿐 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임



한국소비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18

02 농업의 기능

02

농업의
공익적기능

전통적 기능

- ▶ 농업생산 활동을 통한 식량의 공급

공익적 기능

- ▶ 식량공급 이외에 농업이 발휘하는 다양한 공익적 역할과 기능
 - 농업생산 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긍정적 역할과 기능을 학문적 관점에서 표시한 개념
 - 환경 및 생태, 문화 및 경관, 농촌활력 및 지역균형, 식량안보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대해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



한국소비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19

02
 농업의
 공익적기능

02 농업의 공익적 기능 - 4유형

1. 환경 및 생태의 보전
 - ✓ 토양보전, 수자원함양, 홍수조절,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2. 전통문화 및 농촌경관의 유지
 - ✓ 향토문화보전, 경관유지, 휴양 및 체험공간 제공
3. 농촌사회 활력 및 국토의 균형발전 기여
 - ✓ 농촌지역 활성화, 도시혼잡비용 절감, 도농 균형발전
4. 식량안보에 기여
 - ✓ 비상사태 대응 안정적 식량공급 및 경제위기 충격 완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20

02
 농업의
 공익적기능

02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의 필요성과 의미

지속가능 농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농정 강화는 매우 중요
 - 주요 선진국과 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정 목표 달성차원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는 필수적임
 - 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관련 국민적 수요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농정 프로그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고,
 - 농업강국과의 동시다발적 FTA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로 국내 농업활동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21

02 소비자과 함께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사례

02
농업의
공익적기능

'農(농업생산자) = 食(소비자)' 연계 식생활 교육의 전개

- 소비자 측면 :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질병예방
 - 균형적인 신체/정신 발달과 성장
 - 건강한 가족 및 사회생활 유지
- 생산자 측면 : 안전, 안심, 건강에 좋은 농식품 생산 유도 및 소득유지
 -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유도
 - 수입산과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통한 가격 및 소득유지
- 국가적 측면
 - 보건의료 관련 재정지출 감소효과
 -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효과
 -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 에너지절감/환경친화적 지역순환 식생활 시스템 구축
 - 도농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03 GAP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역할

03
GAP활성화를위한
소비자역할

1. GAP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와 인지 필요!!

- ☒ GAP는 모든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
- ☒ GAP는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무라고 농업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제도
- ☒ 위해요소의 합리적 관리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제도
- ☒ 정부의 지원없이 농업인 스스로가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제도



03 GAP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역할

03

GAP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역할

2. GAP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뿐 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귀한 제도임을
소비자가 먼저 알아주어야 함
3. GAP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조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함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한
2018 GAP KOREA 심포지움
(2018.12.3)



한국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24

04 맺음말

04

맺음말

GAP제도는? (시설관리중심제도 → 위해요소관리중심제도)

손 잘 씻고,
정리정돈 잘하고
깨끗이 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새로운 농민운동



한국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25

04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

04
맺음말

국민이 공감하는 공익적 기능의 우선순위 정립 필요

- ▶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익적 기능의 범위와 내용에 차이 존재
 -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선별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유지 및 확산하는 전략 마련 필요

GAP 제도 확산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국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26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Consumer Network for Public Interest

27

3. 제3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 주요 토론 요지

- 2019년 제3회 농식품 안전정책 포럼에서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두 전문가의 국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발전방향, 농업의 공익적가치창조를 위한 GAP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발제가 있었으며, 발표 내용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국가 인증제도에 의해 관리된 원료와 가공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 유해물질의 기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소비자들이 농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주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바른이해를 위한 방안과 HACCP과 GAP등의 정책에 대한 안내, PLS 및 친환경제도 등과의 차이 등이 제시되었으며, GAP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이 소개됨.
 - 소비자의 주요 역할에는 1) GAP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바른 이해, 2) GAP 농산물을 먼저 찾는 노력, 3) 생산농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제시됨.
-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은 다르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이 포럼에서 이를 함께 다룰 수 있어 유익하였으며, 현재는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여도 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함.
- HACCP 인증제도와 GAP 인증제도의 적절한 인증 수준과 인센티브 제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미생물 관련 사고의 사회적인 충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제시됨.

- 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조를 위한 농식품 표시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1) 환경 및 생태의 보전, 2) 전통문화 및 농촌경관의 유지, 3) 농촌사회 화력 및 국토의 균형발전 기여, 4) 식량안보에 기여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들어 5)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안전관련 인증으로 이야기되는 GAP 인증의 경우 향후 전체 농업에서 약 20%의 비중을, 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이 전체의 5~1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학계에서도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학생들이 국가 인증제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 등을 각 대학에 배포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 세계적으로 대체육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는데 국내에서도 성장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등이 있음.
- 정부측 전문가는 주제 발표와 다양한 토론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 정책지원조사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인증 외의 방법으로 식품안전 확보 방안 확대
 - HACCP 인증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 여부와 확대 여부에 대한 정책 방향 보완
 - 곧 현실로 다가올 푸드테크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 논의
 - 소비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비자단체,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업 추진